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하는

아동권리교육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VISION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MISSION

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서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CONTENTS

- 04 • 아동과 권리
- 05 • 유엔아동권리협약
- 09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12 •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 : 긍정적 훈육

세이브더칠드런의 역사는 곧 아동권리 발전의 역사입니다.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미약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설립됐습니다.

1923년 창립자 에글렌타인 켈이 작성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최초의 선언문으로, 이는 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프로그램은 철저히 아동권리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일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아동의 인종, 종교,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직 하나의 목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일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늘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종종 세이브더칠드런의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한다.

고통 받는 아이들은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기 마련이며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자.

비참함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돈, 지식, 그리고 선한 의지다.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다른 곳에 쓰고 지식이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아이들과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돈과 지식을 단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의지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

- 에글렌타인 켈(Eglantyne Jebb, 1876~1928)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아동과 권리



아동은 누구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권리에 복종해야 하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더 이상 성인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소유가 아닌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주체입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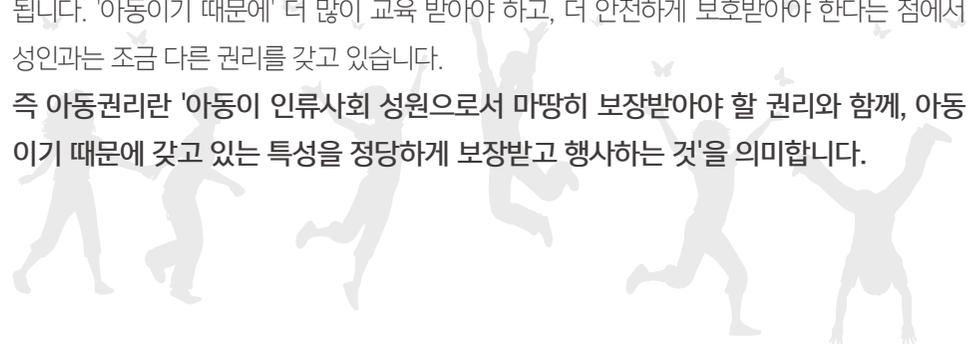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Rights)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인권(human rights)'이라고 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더불어 아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여됩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 받아야 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과는 조금 다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류사회 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함께,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며,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성

-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89.11.20)
-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제사회협약
- 아동을 권리의 적극적 향유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유일한 협약
-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제1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
- 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이 필수이며,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실질적인 규정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제2부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과정과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3부는 부칙으로 서명, 가입, 비준, 개정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제1부 (01조~41조)** : 실질적 규정, 가입국의 의무규정(Substantive Provision)
- **제2부 (42조~45조)** : 이행조치 규정(Implementation/ Monitoring)
- **제3부 (46조~54조)** : 부칙(서명, 가입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4-4-1 모델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가지 기본권, 4가지 기본원칙, 1가지 과정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대 기본권

-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거주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 서비스 등
- 보호권**
 -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발달권**
 -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획득, 생각과 양심의 자유 등
- 참여권**
 -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의견 존중, 정보접근, 모임의 자유 등

4대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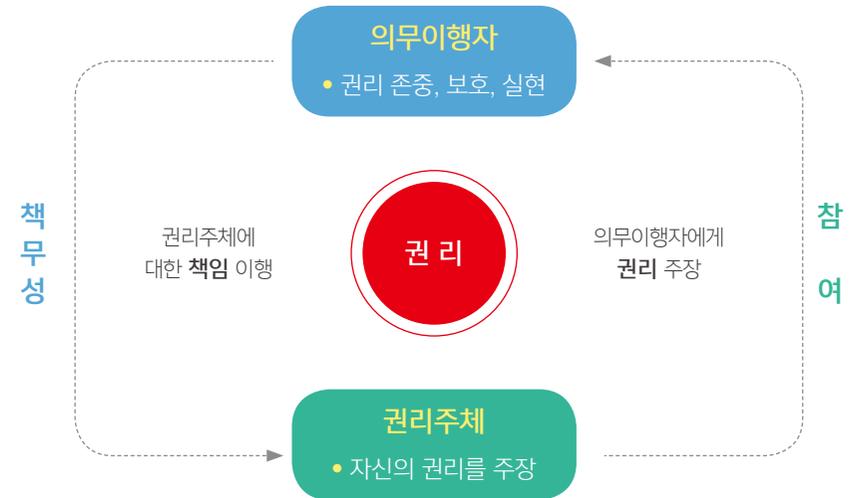
- 비차별**
 -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 재산, 능력,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이 없어야 함
 - 단, 취약한 집단(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난민아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에게 미치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세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생명, 생존과 발달**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 의견 존중과 참여**
 -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짐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함

1 과정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

권리주체와 의무이행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조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지만,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아동, 교사,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모든 사회가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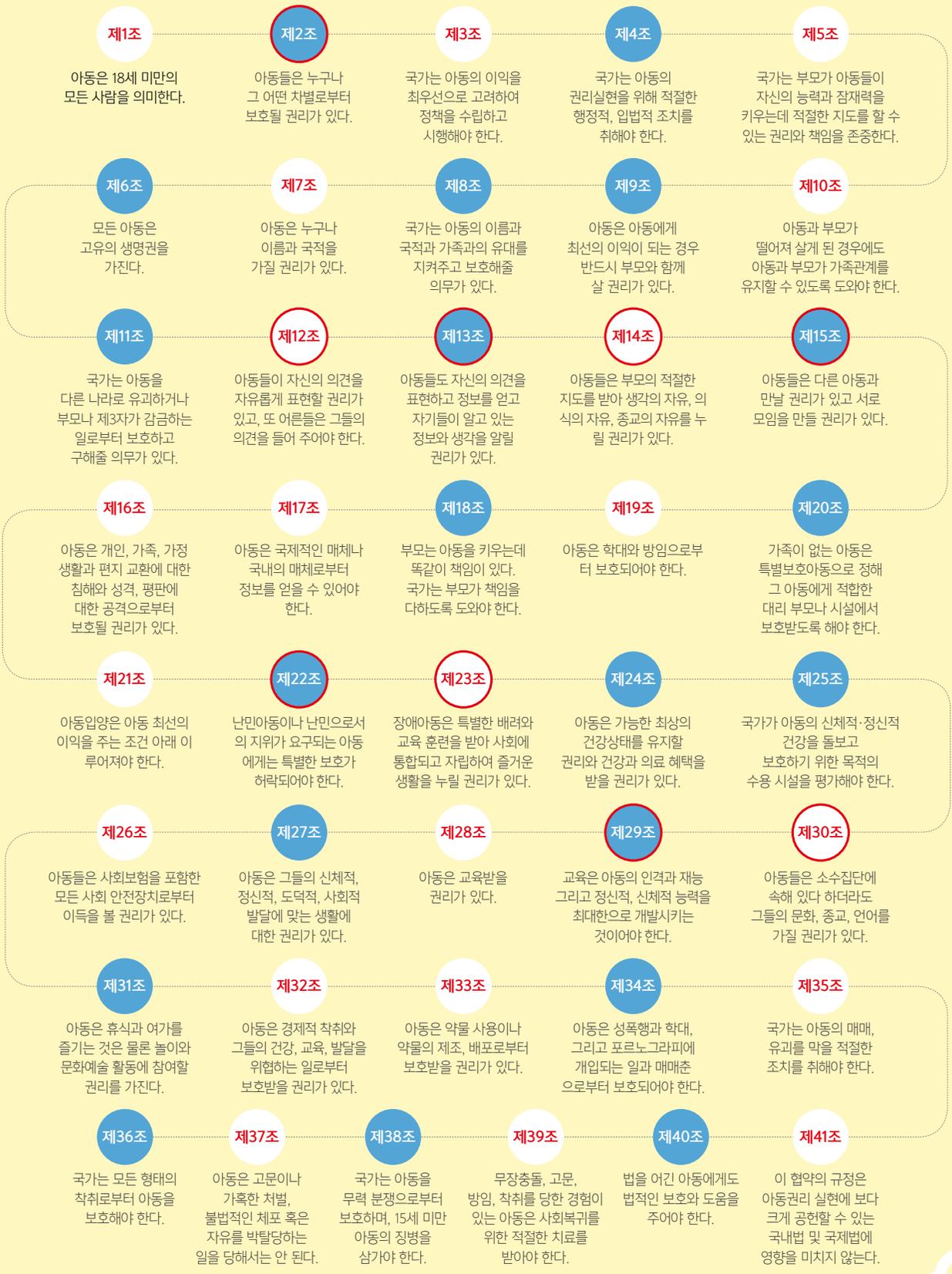
'권리주체'는 참여를 통해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의무이행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주체이고, 모든 성인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이행자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권리주체이기만 할까요?

모든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나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은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을 가진 의무이행자이기도 합니다.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양육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 신체 학대**
 - 손, 발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거나,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
- 정서 학대**
 - 언어적 폭력행위나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행위
 -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
- 성 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 및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유기**
 - 물리적 방임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등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학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유의사항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한 증거사진을 확보 아동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기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씻기거나 옷 갈아입히지 않기 학대를 캐묻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하지 않기
어떻게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예	아니오
1	사고로 보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응답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주세요.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2018)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나부터 돌아보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학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지만,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행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혹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닐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아동들에게 최선이었을까?”

설령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이 혹시 아동의 권리를 해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랑의 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매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 : 긍정적 훈육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급급하기 보다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아동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으로 **긍정적 훈육**을 제안합니다. 긍정적 훈육이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법입니다. 아동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양육의 한 방식으로 다음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적 목표 발견하기

-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목표(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바라는 모습)를 가지고 아동을 바라보고 양육해야 함
- 고함치거나 때리기, 비난하기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즉각적 행동교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 항상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아동을 존중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해야 함

따뜻함과 구조화 제공하기

따뜻함	<p>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제공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 아동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주기 • 아동의 노력과 결과를 인정해주기 • 아동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등
구조화	<p>적절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명확한 소통을 통해 아동 스스로 규칙과 행동기준을 이해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 되어주기 • 아동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아동의 의견 존중하기 •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르치기 • 실수를 바로 잡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등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기

-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존재. 아동의 발달단계를 잘 이해하고, 단계에 맞게 아동을 대해야 함.
- 아동 각자의 기질을 파악해야 함. 아동과 성인의 기질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

문제 해결하기

- 앞선 단계를 지났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 목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주어야 함.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 학대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부모, 교사 등 성인과 아이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은 목표가 아닌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을 위해서든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 훈육에서 제시한 것처럼

- 아동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장기적 목표를 세워보세요.
-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해보세요.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발전할 권리,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듯 우리 모두도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 훈육을 통해 아동에게 어떤 형태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부록 - 온라인 교육시스템 이용 방법

MEMO



www.sc.or.kr/edu 로 접속

1



개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교육신청”에서 지역, 교육명(“아동권리 교육”), 또는 대상으로 검색 후 해당교육 신청

3



교육 이수 후 “나의 교육”에서 수료증 발급 가능

4



구분	지역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중부지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2126-4028	02-2126-4044	kychild@sc.or.kr
동부지부	사업1팀	부산, 울산, 경남	051-758-7732	051-758-7774
	사업2팀	대구, 경북	053-625-1600	053-625-0102
서부지부	사업1팀	전북	063-254-1177	063-254-3636
	사업3팀	광주, 전남, 제주	063-254-1177	063-254-3636
	사업2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2-826-0161	042-826-0163

세계의 모든 미래는 아동들에게 달려 있다.

The future of the world rests with the child.

- **에글렌타인 제브**(Eglantyne Jebb, 1876~1928),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한 후원이 처음이세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일회성 단순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487570 예금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ARS 060-700-1233 한 통화 2,000원

문자 #9595 한 건 5,000원

개인 후원문의 02-6900-4400 / 이메일 donor@sc.or.kr

기업 협력문의 webmaster@sc.or.kr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인증,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